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존폐문제

1. 현 황

- 1986.4.30 청와대 3당대표초청회담
- 6.3 - 4 청와대 야당대표 단독면담
"국회에서 여.야합의 헌법개정안 마련"
- 1986.6.21 3당대표회담 헌특구성원칙합의
- 1986.6.24 본회의 헌특구성결의(만장일치)
"활동시한 9월말까지, 진전에따라 정기국회말까지 연기"
교섭단체간 합의
- 그간 5차의 전체회의와 26차례의 공식.비공식 간담모임.
- 야측의 공청회개최문제와 선실세대화, 후헌특참여방침 고수등으로 공전.
- 1986.12.18 본회의 헌특시한연장 양해.

2. 헌특위 존폐주장 양론의 요지

가. 존치주장

- (1) 헌특폐지는 정부.여당이 당초부터 개헌의지가 없었다는 오해를
받음으로써 정치적부담 초래
- (2) 4.13담화내용이 개헌불가가 아니고 평화적 정부이양과 올림픽
양대사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이후로의 개헌논의 유보이며,
12대국회의원 임기가 1989년 봄(4월)까지라는 점에서 헌특
폐지는 지나친 확대해석이라는 주장 가능.

- (3) 야당공세의 꼬투리를 제공하여 폐지결의안 처리문제가 임시 국회의 중대한 이슈로 될 가능성.
- (4) 국회는 헌법상 유일한 헌법개정심의기관이므로 국회에서는 개정 논의자체가 항시 개방되어 있다는 관점에서 기왕 만든 헌특을 폐지하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라고 지적가능.
- (5) 개헌문제에 관한 차기대통령의 명백한 의사표명이 있기 전에 헌특폐지는 성급한 조치라는 비판.
- (6) 정부의 헌정연구위원회가 존치되는 상태에서 국회헌특만을 폐지하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음.
- (7) 헌특구성은 여.야합의에 의한 만장일치결의로 성립된 것이므로 폐지자체도 여.야합의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논리성립.
- (8) 운영위제안이나 여.야간의 합의발의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민정당 단독으로 폐지결의안제출 불가피.

나. 폐지주장

- (1) 대통령의 4.13담화에서 양대국가대사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 국론분열, 국력낭비의 소모적 개헌논의를 지양할 것을 선언한 이상 헌특의 존치는 대통령의 의지에 정치적부담을 줄 가능성.
- (2) 평화적 정부이양과 올림픽개최가 국가의 최대목표로 확정되고 개헌문제는 차후의 문제로 유보된 이상 최고목표달성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요인은 처음부터 제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

- (3) 야당측이 장.내외 개헌투쟁은 실효를 거둘 수 없다고 판단하는 상황에 처할 경우, 유일한 공식적 개헌논의 기구인 헌특예의 무조건 참여, 개헌논의를 하자고 주장할 때 여당측은 이에 반대한 명분이 없어 끌려 들어갈 가능성.
- (4) 야당 핵심세력이 선실세대화, 후헌특참여, 대통령직선제관철등의 방침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헌특을 존치하는 것은 하등의 성과도 없이 정치적 불씨만을 남기는 셈이라는 주장.
- (5) 사실상 활동없는 특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행정력소모 (직원, 예산, 사무실등)

3. 검토의견

가. 판단기준

-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논리적 일관성유지
(현상황은 개헌반대가 아니고 개헌논의의 건설적유보라는 점)
- 헌법개정심의 기관으로서의 국회의 권능유지
(헌법개정기능 자체를 포기하는 인상을 주어서는 안된다는 점)
- 가급적 야당예의 자극을 감소시키면서 특히, 온건 야당세력이 발붙일 터전을 유지
- 정부.여당의 정국주도기능에 대한 국민의 신뢰감 조성
- 개헌문제와 같은 고도의 정치문제에는 정치적판단이 법적조치보다 우선

나. 의 견

폐지주장과 존치주장에는 각기 장단점이 있으며, 사실상 양주장은 우열을 가리기 힘들 정도로 팽팽한 상황에 있다고 판단됨.

그러나, 헌특을 국회법상으로는 존치해두면서 정치적으로는 소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상기 판단기준에 합치되는 점이 많다고 생각되며, 이 밖에 다음의 사항을 추가로 고려해 볼 때 바람직하다고 봄.

- (1) 헌특을 존치해 두어도 야당측은 그간의 개헌전략과 정치성향으로 보아 무조건 헌특참여 결정을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그렇기 위하여는 우선 야당내에서 기존입장(선실세대화, 후참여) 고수론자와 참여론자 사이에 진통과정이 있을 것이며, 참여론자가 우세할 여지는 크지 않을 것임.
- (2) 민정당 전당대회에서 대통령후보가 결정되고 선거인단선거, 대통령선거, 지자제선거등 정치일정이 발표되면 개헌정국은 선거정국으로 전환하게 될 수 밖에 없으므로 야당측도 선거 보이코트등 장외투쟁을 선호하게 됨으로써 원내문제에 대한 관심도가 급감할 것임.